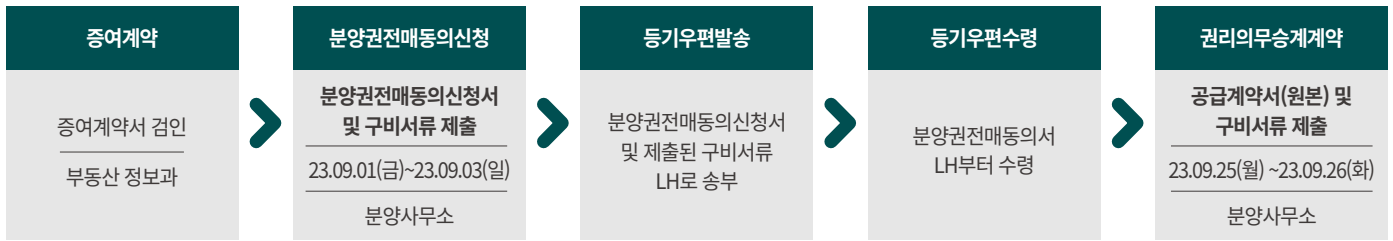


-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. 다만, 주택법시행령 제73조(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) 제④항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분양권 전매동의서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.
-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은 **계약자 본인**이 LH에 직접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, 일시적 다수 신청에 따른 고객편의를 위하여 급회 신청건에 한하여, 당사에서 접수 후 LH에 일괄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(대리접수) 및 분양권 전매동의서를 수령 할 예정입니다.
- 급회 신청기간 이후에는 1차 중도금 기일(23년 11월 15일) 이후부터 개별로 진행 될 예정이며, 계약자 본인이 직접 LH 서울지역본부(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)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 접수 및 분양권 전매동의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.
- 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 접수 시와 권리의무승계 계약 시 구비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서류미비 시 개별 진행하셔야 합니다.
(※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필요 구비서류와 별개)

■ 진행절차



※ 급회 배우자증여(부부공동명의) 권리의무승계 계약 이후 중도금대출 자서등의 사유로 추후 가능(1차중도금 기일인 23년 11월 15일 이후 분양사무소에서 안내예정)하며, 계약자 본인이 직접 등기우편 발송 하셔야 합니다.

■ 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

- 1) 접수기간 : 23.09.01(금) ~ 23.09.03(일) 10:00 ~ 17:00
- 2) 접수처 :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(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씨밋갤러리 2층)
- 3) 구비서류 : 구비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.

- [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] 및 [분양권 전매동의서] →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가능
- 검인 된 증여계약서 사본 → 검인 문 :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(02-879-6643)
-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
-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번호 전체 표시분) →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→ 주민번호 전체 표시분

양도인 (계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감도장 ▪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) 등] ▪ 매도용 인감증명서[본인발급 /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]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양수인 (계약자 배우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감도장 ▪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) 등] ▪ 일반 인감증명서[본인발급]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※ LH 전매동의서 신청 접수 시 반드시 양도인 본인 내방(대리인 및 양수인 불가)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■ 권리의무승계 계약

- 1) 접수기간 : 23.09.25(월) ~ 23.09.26(화) 10:00 ~ 17:00
- 2) 접수처 :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(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씨밋갤러리 2층)
- 3) 구비서류 :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- LH의 날인된 [분양권 전매동의서] → 당사에서 일괄 수령 및 보관
- 검인 된 증여계약서 사본
- 아파트공급계약서 계약서 원본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→ 주민번호 전체

양도인 (계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감도장 ▪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) 등] ▪ 매도용 인감증명서[본인발급 /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]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양수인 (계약자 배우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감도장 ▪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) 등] ▪ 일반 인감증명서[본인발급]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※ 권리의무승계 계약 시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 내방(대리인 불가)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※ 배우자증여 시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검인 된 증여계약서 원본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꼭 필요하니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